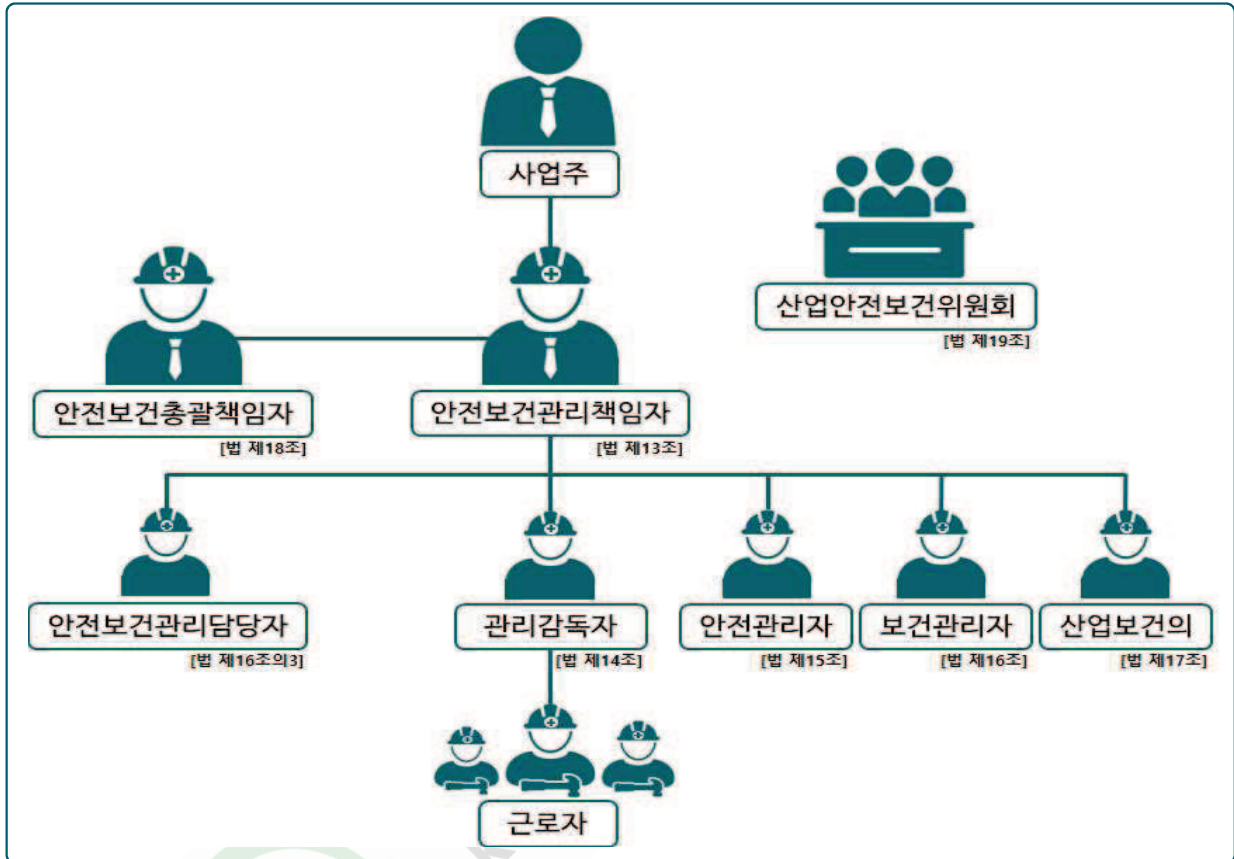


안전·보건 관리체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의 종류, 규모, 근로자 수에 따라 적절한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1 자격 및 선임방법



법조항	자격	선임방법
제13조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 (시행령 제9조 제2항)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존[사업장] (시행령 제9조 제4항)

1.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건설업 외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등 ✓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시행령 별표1의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총괄·관리 업무(법 제13조 제1항)

-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⑧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2) 지휘·감독 업무(법 제13조 제2항)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3)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 의무(법 제16조의2)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 업무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의하는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

2.1 자격 및 선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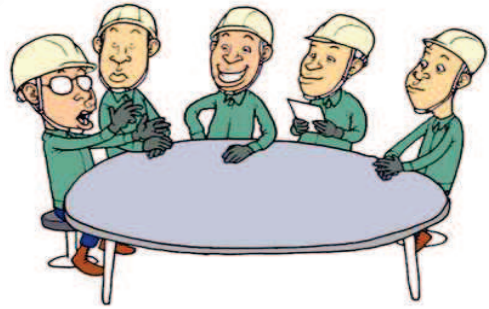
법조항	자격	선임방법
제14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법 제14조 제1항)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존[사업장]

2.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제외대상

-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 다. 국제 및 외국기관
- ②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③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시행령 별표1) 참조



2.3 관리감독자의 업무

1)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시행령 제10조 제1항)

-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⑤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시행령 제10조 제3항)

- 고압실 내 작업 등 38개 작업
 - *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시행령 별표2) 참조

3)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시행령 제10조 제4항)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법 제31조 제3항)
-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법 제36조의2 제1항)
- ③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안전관리자

3.1 자격 및 선임방법



법조항	자격	선임방법
제15조	시행령 별표4에 해당하는 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1), (2) 서식의 선임 보고서를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시행령 제12조 제6항)

3.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건설업 외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등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시행령 별표3)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150억원 미만)으로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 ※ 하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에 의거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3 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인 경우에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 제4항)

- ①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②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3.4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1) 법 제18조 제1항(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시행령 제12조 제3항)

- ※ 단,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적용대상 도급사업(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시행령 제23조)과 동일)

건설업 외		건설업
50명 이상	10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명 이상 대상업종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하수급인 포함)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 제5항, 시행규칙 제15조의2)

-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3.5 안전관리자의 업무(시행령 제13조)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④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⑤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⑧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⑨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⑩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6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법 제16조의2)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건관리자

4.1 자격 및 선임방법



법조항	자격	선임방법
제16조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1), (2) 서식의 선임 보고서를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시행령 제16조 제3항)

4.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건설업 외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등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시행령 별표5)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4.3 보건관리자의 업무(시행령 제17조)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③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④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⑤ 산업보건의 직무
- ⑥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⑦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⑧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⑨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⑩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⑪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⑫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⑭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4 보건관리자의 공동선임, 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

관련 내용은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시행령 제12조),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시행규칙 제15조의2),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법 제16조의2) 기준을 준용한다.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1 자격 및 선임방법



법조항	자격	선임방법
제1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것 2.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존[사업장]

5.2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시행령 제19조의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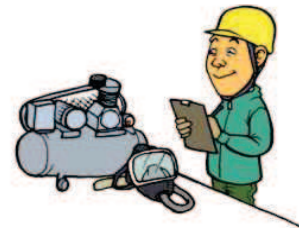
사업의 종류	규모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5.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시행령 제19조의5)

-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④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⑥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시행일

- ✓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8년 9월 1일
-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9년 9월 1일



6. 산업보건의

6.1 자격 및 선임방법



법조항	자격	선임방법
제17조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 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1), (2) 서식의 선임 보고서를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시행령 제20조 제3항)

6.2 산업보건의의 업무(시행령 제22조)

- ①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②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③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 안전보건총괄책임자

7.1 자격 및 선임방법



법조항	자격	선임방법
제18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	지정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존[사업장]

7.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시행령 제24조)

- ①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②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⑤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조항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건설업 외	건설업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등 ✓ 시행령 별표6의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 이상)

8.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법 제19조 제2항, 제4항)

-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⑦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3)

위원장

- ✓ 위원 중 호선(互選)
-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근로자위원

- ✓ 근로자대표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위원

-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 안전관리자 1명
- ✓ 보건관리자 1명
- ✓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8.3 회의 일시 및 회의록 작성(시행령 제25조의4, 제25조의6)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